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6. 4.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회



**수신 : 광진구청장**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6년 4월 1일 ~ 4월 28일(28일간)**

○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 김 강 산 (광진구의회 의원)**

▶ **검사위원 : 허 은 (광진구의회 의원)**

▶ **검사위원 : 이 은 규 (세 무 사)**

▶ **검사위원 : 임 현 찬 (회 계 사)**

▶ **검사위원 : 김 형 준 (세 무 사)**

▶ **검사위원 : 정 준 영 (회 계 사)**



#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2026년 4월 2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진구의회로부터 광진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광진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광진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광진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강 산

서명 

검사위원 허 은

서명 

검사위원 이 은 규

서명 

검사위원 임 현 찬

서명 

검사위원 김 형 준

서명 

검사위원 정 준 영

서명 





# 목 차

I. 결산검사 개요 .....	1
II. 결산개요 .....	5
1. 일반현황 .....	7
가. 기본현황 .....	7
나. 행정조직 .....	7
2. 회계현황 .....	7
3. 세입·세출결산 .....	9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	9
나. 세입·세출결산 분석 .....	10
(1) 세입결산 (자원별 현황) .....	10
(2)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 .....	11
4. 기금결산 .....	12
5. 재무제표 .....	13
가. 재무제표 요약 .....	13
나. 재무제표 분석 .....	13
(1) 재정상태 .....	13
(2) 재정운영 .....	15
III.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19
1. 예산총칙 .....	21
2. 세입·세출 .....	23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b>가. 세입</b> .....	<b>23</b>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b>23</b>
(2) 일반회계 세입 .....	<b>23</b>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	<b>23</b>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수납계산서와 대사 .....	<b>23</b>
[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b>24</b>
[라]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	<b>24</b>
(3) 특별회계 세입 .....	<b>25</b>
[가] 특별회계 세입결산 .....	<b>25</b>
[나]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수납계산서와 대사 .....	<b>25</b>
(4) 세입추계 및 결산 (일반회계) .....	<b>25</b>
(5) 세입징수실적 (일반회계) .....	<b>26</b>
[가] 지방세 .....	<b>26</b>
[나] 세외수입 .....	<b>27</b>
1) 공유재산 매각현황 .....	<b>28</b>
2) 체납액 관리현황 (일반회계) .....	<b>29</b>
(6)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 실적 .....	<b>30</b>
<b>나. 세출</b> .....	<b>30</b>
(1)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b>30</b>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b>30</b>
(3) 특별회계 세출결산 .....	<b>31</b>
(4)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b>31</b>
(5) 장기계속사업 운용 현황 .....	<b>31</b>
(6) 지방보조금 사업 .....	<b>34</b>
(7) 예산의 이용·이체, 전용 .....	<b>36</b>
(8) 민간위탁 .....	<b>39</b>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 계속비 .....	42
4. 명시이월비 .....	43
5. 사고이월비 .....	45
6. 예비비 .....	48
7. 성과보고서 .....	51
8.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 .....	54
가. 채권 및 채무 .....	54
(1) 채권 .....	54
(2) 채무 .....	56
나. 공유재산 .....	58
다. 물품 .....	63
9. 금고 .....	65
IV. 개선·권고사항 .....	66
V. 수범사례 .....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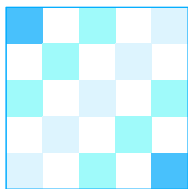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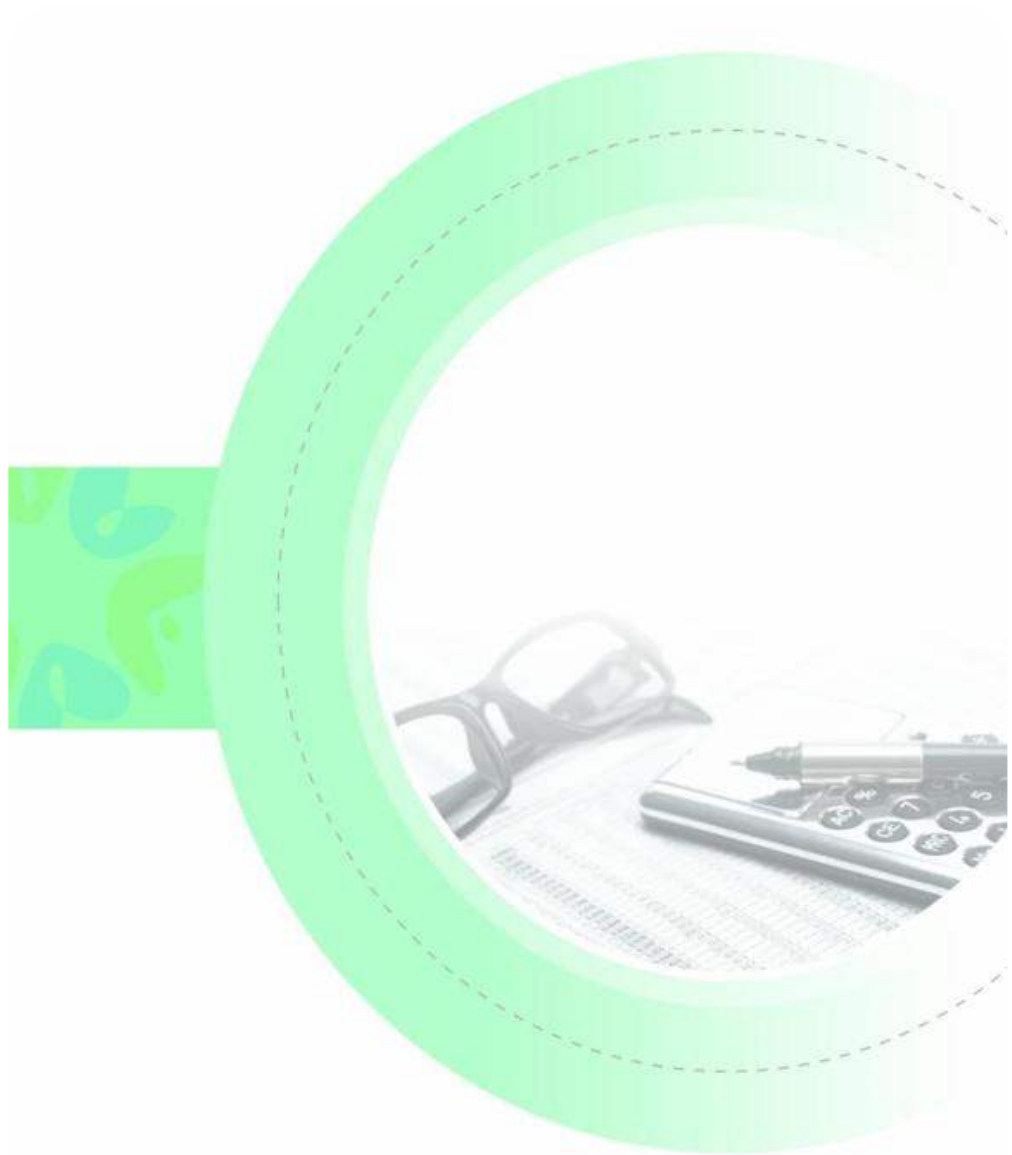
## 【 표 목 록 】

[표1-1]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9
[표1-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10
[표1-3]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11
[표2-1] 기금 조성 및 사용 총괄 .....	12
[표2-2]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12
[표3-1]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14
[표3-2]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14
[표3-3]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15
[표3-4]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16
[표3-5]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16
[표3-6]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17
[표4-1] 최근 3년간 세입 추계(지방세+세외수입) 및 결산 현황 .....	25
[표4-2] 최근 3년간 구세(지방세) 징수 현황 .....	26
[표4-3]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산 현황 .....	27
[표4-4] 2025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 .....	28
[표4-5] 최근 5년간 체납액 증감 현황 .....	29
[표4-6] 최근 5년간 지방세 지출(비과세, 감면) 실적 .....	30
[표5-1] 장기계속사업과 계속사업비의 비교 .....	31
[표5-2] 장기계속사업 총괄 .....	32
[표5-3] 장기계속사업 (공사) .....	32
[표5-4] 장기계속사업 (용역) .....	33
[표6-1]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현황 .....	34
[표6-2] 2025년 민간지원 지방보조금 .....	35
[표6-3] 2025년 지방보조금 자체보조사업 총괄 집행현황 .....	35
[표6-4] 2025년 지방보조금 자체보조사업 통계목별 집행현황 .....	35
[표6-5]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일반회계) .....	36
[표7-1] 2025회계연도 예산이체 현황 (일반회계) .....	37

[표7-2] 2025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 (일반회계) .....	37
[표8-1]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총괄 집행현황 .....	39
[표8-2]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세부 집행현황 .....	39
[표9-1]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총괄내역 .....	43
[표9-2]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명시이월액 1억원 이상) .....	44
[표10-1]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총괄내역 .....	46
[표10-2]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 세부 집행내역 .....	46
[표11-1]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	48
[표11-2] 예비비 사용내역 (일반회계) .....	49
[표12] 성과지표 달성현황 .....	51
[표13-1] 채권현황 .....	55
[표13-2] 회계별 채권 현황 .....	55
[표13-3] 최근 5년간 채권 현황 .....	56
[표14-1] 채무 현황 .....	58
[표14-2] 최근 5년간 채무 현황 (기준연도별 현재액) .....	58
[표15-1] 종류별 공유재산 증감 현황 .....	60
[표15-2] 용도별 공유재산 증감 현황 .....	60
[표15-3] 용익물권 현황 (새울 공유재산프로그램) .....	61
[표15-4]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의 평가 .....	62
[표16-1] 물품 증감 현황 (정수물품) .....	64
[표16-2]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	64
[표16-3] 2025회계연도 정수물품 취득현황 (일반회계) .....	64



# I . 결산검사 개요





# I. 결산검사 개요

##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검사기간 : 2026. 4. 1.(수) ~ 4. 28.(화), 28일간

3. 검사장소 : 광진구의회 4층 특별위원회실

4. 검사대상 :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

## 5.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김강산	결산검사 업무 총괄	광진구의회 의 원
위 원	허 은	담당관, 기획경제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성과보고서	광진구의회 의 원
위 원	이은규	문화교육국, 안전환경국,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세 무 사
위 원	임현찬	행정지원국, 보건소,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회 계 사
위 원	김형준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주거안정기금, 주차장특별 회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세 무 사
위 원	정준영	복지국, 의회사무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노인 복지기금, 자활기금, 장학기금,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회 계 사

## 6. 결산검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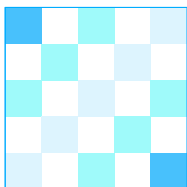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진행

## 7. 결산검사 관련 회계자료 관리현황 등 점검

- 징수부, 세입금수납부 : 세무종합시스템(지방세),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세외수입 부과 자료), 수기관리(보조금, 교부금 등 미부과자료)
-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현금출납부 및 지급내역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및 내역부, 채권관리부, 분기별 예산배정 (정기) 계획서, 자금배정계획서(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유가증권 수납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대장 : 해당없음.
- 무예산 집행사례, 무배정 집행사례 : 발견하지 못함.

## Ⅱ . 결 산 개 요

1. 일반현황	7
2. 회계현황	7
3. 세입·세출결산	9
4. 기금결산	12
5. 재무제표	13





## II. 결산개요

### 1. 일반현황

#### 가. 기본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 개, 세대, 명)

구 분	면 적 (km <sup>2</sup> )	시·군·구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17.08	1	15	7	373	3,037	169,931	331,963	171,133	331,167

#### 나. 행정조직 (2025. 12. 31.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구 청			의 회 사무국	보 건 소		동	공무원수
	국	담당관	과		과	지소		
행정조직	7	2	33	1	4	1	15	1,390

### 2. 회계현황

광진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4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통합계정은 2025회계연도 운용 내역 없음.)

[광진구 회계현황]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 치 목 적
일반회계	일 반 회 계	지방재정법	일반적인 재정운영 활동 수행
기 타 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조 례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운용
	주 차 장 특 별 회 계	조 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기 금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 사 시 설 건 립 기 금	조 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설
	재 난 관 리 기 금	조 례	재난의 예방사업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사업 자금 사전 조성
	노 인 복 지 기 금	조 례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 및 지원
	자 활 기 금	조 례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주 거 안 정 기 금	조 례	구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용자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조 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식 품 진 흥 기 금	조 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수행
	환 경 공 무 관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조 례	구 소속 환경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도 로 굴 차 복 구 기 금	조 례	구 도로의 신속한 굴차복구 및 안전한 사후관리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조 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	조 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광 진 구 장 학 기 금	조 례	구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
	고 향 사 랑 기 금	조 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공 무 원 생 활 안 정 기 금	조 례	소속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3. 세입·세출결산

####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 광진구의 2025회계연도 총 세입은 1,044,787백만원, 총 세출은 907,289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37,49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A)	세 출(B)	잉 여 금(A-B)			
			소 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1,044,787	907,289	137,498	27,939	9,124	100,435
일 반 회 계	984,962	890,701	94,260	23,335	9,104	61,821
기타특별회계	59,825	16,588	43,238	4,604	20	38,614

\* 회계별 총계금액임.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일반회계 지정재원 잉여금(687백만원) 포함

-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4.2%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5.5%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1.3% 높으며, 잉여금의 경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1-1]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평균 증가율
세 입(A)		886,951	1,010,501	980,119	959,582	1,044,787	4.2
세 출(B)		731,866	812,094	800,422	799,485	907,289	5.5
잉여금 (A-B)	소 계	155,085	198,406	179,696	160,098	137,498	-3.0
	이 월 금	66,705	72,284	67,057	51,780	27,938	-19.6
	보 조 금 실제반납금	19,636	19,646	11,105	8,093	9,124	-17.4
	순 세계 잉 여 금	68,744	106,476	101,534	100,225	100,435	9.8

※ 연평균 증가율(e호조 자동 산출)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 증가율로 환산
- 산정방식 : [(최종연도/기준연도)<sup>1/(전체연도 수-1)</sup>-1]×100 (소수점 1자리)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 나. 세입·세출결산 분석

### (1)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

- 2025회계연도 세입은 1,044,7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20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4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19%)임.
- 전년대비 수입 증가 분야는 보조금 101,625백만원이며, 감소 분야는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22,127백만원, 세외수입 11,510백만원임.
- 총 1,044,787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9.4%와 61.9%임.

[표1-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전년대비 (%)	2025	전년대비 (%)
계	980,119	959,582	97.90	1,044,787	108.88
자 체 수 입	191,187	203,113	106.24	202,428	99.66
지 방 세	122,157	125,078	102.39	135,903	108.65
세 외 수 입	69,030	78,035	113.05	66,526	85.25
이 전 수 입	547,530	538,705	98.39	646,721	120.05
지 방 교 부 세	22,377	17,752	79.33	18,462	104.00
조 정 교 부 금 등	191,121	176,481	92.34	182,163	103.22
보 조 금	334,032	344,472	103.13	446,096	129.5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241,401	217,765	90.21	195,637	89.84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포함된 금액임.

## (2)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

○ 세출은 907,28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804백만원(13.48%)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29,447백만원(47.33%), 기타 149,396백만원(16.47%), 일반공공행정 125,809백만원(13.87%) 등임.

-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42.94%), 교육 (125.47%), 보건(120.12%) 등임.

- 전년 대비 지출의 감소 분야는 기타특별회계 12,29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02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0백만원 등임.

※ 예산현액 총 1,020,624백만원 중 907,289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8.9%(총계기준)임.

[표1-3]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4	전년대비 (%)		
			2025	전년대비 (%)	
계	800,422	799,485	99.88	907,289	113.48
일반회계	781,956	770,598	98.55	890,701	115.59
일반공공행정	100,123	51,785	51.72	125,809	242.94
공공질서 및 안전	8,404	8,636	102.75	8,034	93.03
교육	17,233	16,426	95.32	20,611	125.47
문화 및 관광	33,691	32,475	96.39	38,096	117.31
환경	34,150	38,249	112.00	38,836	101.53
사회복지	364,809	406,266	111.36	429,447	105.71
보건	20,881	20,786	99.54	24,969	120.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706	9,365	56.06	9,217	98.42
교통 및 물류	20,628	20,934	101.48	21,468	102.55
국토 및 지역개발	30,635	24,907	81.30	24,817	99.64
기타	134,697	140,768	104.51	149,396	106.13
특별회계	18,466	28,887	156.43	16,588	57.42
기타특별회계	18,466	28,887	156.43	16,588	57.42

## 4. 기금결산

- 광진구 2025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33,810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8,169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82,839백만원을 공제한 69,140백만원임.

[표2-1] 기금 조성 및 사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D)
		증가 또는 감소액 (D=B-C)	조성액 (B)	사용액 (C)	
계	133,810	-64,671	18,169	82,839	69,140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71,085	-40,982	1,649	42,631	30,103
고향사랑기금	127	51	51	0	1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9,834	-23,712	6,288	30,000	16,122
중소기업육성기금	2,098	-259	5,287	5,545	1,840
자활기금	1,370	104	156	52	1,475
노인복지기금	773	-5	30	35	768
공무원생활안정기금	0	193	315	122	193
광진구장학기금	7,541	125	288	163	7,666
재난관리기금	4,098	-334	1,411	1,745	3,763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62	40	44	4	702
옥외광고발전기금	784	-50	75	125	733
도로굴착복구기금	4,550	-507	1,684	2,191	4,044
식품진흥기금	888	-68	76	145	820
주거안정기금	0	733	815	82	733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에 비해 기금 사용의 증가율이 약 51.2% 높으며, 회계연도 말의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19.9% 감소하였음.

[표2-2]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A)	155,572	168,139	193,391	202,436	133,810	-3.7
당해연도 조성액 (B)	37,923	75,900	75,808	28,035	18,169	-16.8
당해연도 사용액 (C)	25,357	50,648	66,763	96,660	82,839	34.4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168,139	193,391	202,436	133,810	69,140	-19.9

※ 연평균 증가율(e호조 자동 산출)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 증가율로 환산
- 산정방식 : [(최종연도/기준연도)^(1/(전체연도 수-1))-1]×100 (소수점 1자리)

## 5. 재무제표

### 가. 재무제표 요약

- 2025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30,453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2%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8,653백만원(483.2%)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A-B)	총수익 (A)	총비용 (B)	운영차액 (A-B)
2025년	2,499,879	28,345	2,471,534	851,141	897,794	(46,653)
2024년	2,464,662	23,581	2,441,081	747,399	755,399	(8,000)
증 감	35,217	4,764	30,453	103,742	142,395	(38,653)

### 나. 재무제표 분석

#### (1) 재정상태

- 재정상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2,471,534백만원, 전년대비 30,453백만원(1.2%) 증가함.
- 총자산은 2,499,8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217백만원(1.4%) 증가함.
  - 유동자산은 재정자금(유동)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88,37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투자자산은 융자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842백만원 감소함.
  - 일반유형자산은 신청사 및 복합청사의 완공 등으로 전년대비 89,97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은 주차장 및 보건소의 건설 등으로 전년대비 36,860백만원 증가함.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등으로 전년대비 7,04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4,638백만원 증가함.

[표3-1]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 산	2,464,662	2,499,879	35,217	1.4
Ⅰ. 유 동 자 산	323,875	235,501	(88,374)	(27.3)
Ⅱ. 투 자 자 산	16,005	15,163	(842)	(5.3)
Ⅲ. 일 반 유 형 자 산	283,035	373,014	89,979	31.8
Ⅳ. 주 민 편 의 시 설	466,321	503,181	36,860	7.9
Ⅴ. 사 회 기 반 시 설	1,367,053	1,360,009	(7,044)	(0.5)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373	13,011	4,638	55.4
부 채	23,581	28,345	4,764	20.2
Ⅰ. 유 동 부 채	8,880	9,800	920	10.4
Ⅱ.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4,701	18,545	3,844	26.1
순 자 산	2,441,081	2,471,534	30,453	1.2
Ⅰ. 고 정 순 자 산	2,123,175	2,244,414	121,239	5.7
Ⅱ. 특 정 순 자 산	146,258	81,177	(65,081)	(44.5)
Ⅲ. 일 반 순 자 산	171,648	145,943	(25,705)	(15)

[표3-2]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490,122	100.00	2,464,662	100.00	2,499,879	100.00
유 동 자 산 <sup>1)</sup>	419,052	16.83	323,875	13.14	235,501	9.42
투 자 자 산 <sup>2)</sup>	16,399	0.66	16,005	0.65	15,163	0.61
일 반 유 형 자 산 <sup>3)</sup>	224,578	9.02	283,035	11.48	373,014	14.92
주 민 편 의 시 설 <sup>4)</sup>	444,721	17.86	466,321	18.92	503,181	20.13
사 회 기 반 시 설 <sup>5)</sup>	1,371,523	55.08	1,367,053	55.47	1,360,009	54.40
기 타 비 유 동 자 산 <sup>6)</sup>	13,849	0.55	8,373	0.34	13,011	0.52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총부채는 28,3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64백만원(20.2%) 증가함.
- 유동부채는 보조금 반납 예정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2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세입세출외현금(장기) 등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844백만원 증가함.

[표3-3]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9,044	100.00	23,581	100.00	28,345	100.00
유 동 부 채 7)	19,654	50.34	8,880	37.66	9,800	34.57
장 기 차 입 부 채 8)	-	-	-	-	-	-
기 타 비 유 동 부 채 9)	19,390	49.66	14,701	62.34	18,545	65.43

## (2) 재정운영

- 재정운영: 운영차액(총수익-총비용)은 △46,653백만원, 전년대비 38,653백만원(483.2%) 감소
- 총수익은 851,1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3,742백만원(13.9%) 증가함.
  -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 및 기타임시세외수익(그외 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6,58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정부간 이전수익은 보조금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10,434백만원 증가함.
- 총비용은 897,7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2,395백만원(18.9%) 증가함.
  - 인건비는 전년대비 8,49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운영비는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및 복지관련 위탁대행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027백만원 증가함. 정부간 이전비용은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1,33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민간등 이전비용은 민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9,526백만원 증가함.

7)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예수보관금 등

8)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9)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관금 등

[표3-4]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246,728	266,387	19,659	8.0
가. 사업총원가	590,720	711,194	120,474	20.4
나. 사업수익	343,992	444,807	100,815	29.3
II. 관리운영비	149,305	157,875	8,570	5.7
III. 배분비용	15,374	28,725	13,351	86.8
IV. 배분수익	44,146	28,945	(15,201)	(34.4)
V.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	367,261	424,042	56,781	15.5
VI. 일반수익	359,261	377,389	18,128	5.0
VII. 재정운영결과 ( V - VI )	8,000	46,653	38,653	483.2

[표3-5]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742,840	100.00	747,399	100.00	851,141	100.00
자체 조달 수익 <sup>10)</sup>	201,754	27.16	212,147	28.38	205,565	24.15
정부간 이전수익 <sup>11)</sup>	540,955	72.82	535,073	71.59	645,507	75.84
기 타 수 익 <sup>12)</sup>	131	0.02	179	0.03	69	0.01

10)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11)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12)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표3-6]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701,764	100.00	755,399	100.00	897,794	100.00
인 건 비 <sup>13)</sup>	157,354	22.42	163,580	21.65	172,077	19.17
운 영 비 <sup>14)</sup>	125,525	17.89	138,153	18.29	145,180	16.17
정부간이전비용 <sup>15)</sup>	15,578	2.22	18,388	2.43	19,724	2.20
민간등이전비용 <sup>16)</sup>	375,233	53.47	412,111	54.56	521,637	58.10
기 타 비 용 <sup>17)</sup>	28,074	4.00	23,167	3.07	39,176	4.36

13)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등

14) 도서구입 및 인쇄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출장비, 위탁대행사업비 등

15)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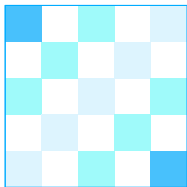
16)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비용 등

17)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Ⅲ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예산총칙 .....	21
2. 세입·세출 .....	23
3. 계속비 .....	42
4. 명시이월비 .....	43
5. 사고이월비 .....	45
6. 예비비 .....	48
7. 성과보고서 .....	51
8.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 .....	54
9. 금고 .....	65





### Ⅲ.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1. 예산총칙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 광진구의 2025회계연도 일시차입 실적은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sup>18)</sup>	일시차입 한도액	일시차입 한도액 결산
합 계	820,176	24,605	-
일반회계	778,239	23,347	-
특별회계	41,937	1,258	-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명세'와 같다. [본 의견서 p.23 참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본 의견서 p.56 참조]

제4조 지방채 발행 "없음" [본 의견서 p.56 참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본 의견서 p.43 참조]

제6조 계속비 사업 "없음" [본 의견서 p.42 참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53,190천원(일반 4,253,190천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200,000천원으로 한다.<sup>19)</sup> [본 의견서 p.48 참조]

제8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규정에 의하여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 의견서 p.36 참조]

1. 공무원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항목
2. 공공요금 및 제세
3. 차입금의 원리금
4.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9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18)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1,020,624백만원(일반회계 961,466백만원, 특별회계 59,158백만원)임.

19) 제7조 금액은 당초 예산 편성 기준이고,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예비비 예산액은 8,843백만원(일반회계 8,643백만원, 특별회계 200백만원)임.

[주요 기능(분야)별 결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율 (B/A)	분야별 지출비율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율 (B/A)	분야별 지출비율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율 (B/A)	분야별 지출비율
합계	891,815	781,956	87.7	100.0	860,301	770,598	89.6	100.0	961,466	890,701	92.6	100.0
일반공공행정	107,863	100,123	92.8	12.8	56,111	51,785	92.3	6.7	132,848	125,809	94.7	14.1
공공질서및안전	10,588	8,404	79.4	1.1	9,239	8,636	93.5	1.1	8,784	8,034	91.5	0.9
교육	18,916	17,233	91.1	2.2	20,025	16,426	82.0	2.1	21,622	20,611	95.3	2.3
문화 및 관광	52,437	33,691	64.3	4.3	45,710	32,475	71.0	4.2	45,525	38,096	83.7	4.3
환경	37,390	34,150	91.3	4.4	41,772	38,249	91.6	5.0	41,395	38,836	93.8	4.4
사회복지	379,894	364,809	96.0	46.7	420,898	406,266	96.5	52.7	442,193	429,447	97.1	48.2
보건	25,057	20,881	83.3	2.7	23,533	20,786	88.3	2.7	25,865	24,969	96.5	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974	16,706	92.9	2.1	11,180	9,365	83.8	1.2	11,207	9,217	82.2	1.0
교통및물류	33,826	20,627	61.0	2.6	35,359	20,934	59.2	2.7	29,501	21,468	72.8	2.4
국토및지역개발	40,496	30,635	75.7	3.9	34,178	24,907	72.9	3.2	32,955	24,817	75.3	2.8
예비비	12,728	0	0	0	8,430	0	0	0	5,570	0	0	0
기타	154,647	134,697	87.1	17.2	153,864	140,768	91.5	18.3	164,003	149,396	91.1	16.8

※ 기타분야 : (정책) 행정운영경비 - (단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29,447백만원(48.2%)으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타 149,396백만원(16.8%),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25,809백만원(14.1%)을 차지하고 있음.

**분석 및 의견**

상기 표를 살펴보면 분야별 자원 배분에 있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등 경직성 경비가 상당 부분을 점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범주가 크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

## 2. 세입·세출

### 가. 세입

#### (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세출예산현액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결산상 잉여금 ③=①-②
합 계	1,020,624,014,970	1,044,786,971,239	907,289,348,784	137,497,622,455
일 반 회 계	961,466,460,150	984,961,712,329	890,701,389,248	94,260,323,081
기 타 특 별 회 계	59,157,554,820	59,825,258,910	16,587,959,536	43,237,299,374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 ④=⑤+⑥		보조금 실제반납금 ⑦=⑧+⑨		지정재원 잉여금⑩	순세계잉여금 ⑪=③-④-⑦-⑩
	명시이월 ⑤	사고이월 ⑥	보조금반납금 ⑧	교부차액 ⑨		
합 계	20,842,797,630	7,095,608,066	9,123,887,636	370	687,359,450	99,747,969,303
일 반 회 계	17,670,759,580	5,663,825,766	9,104,070,594	370	687,359,450	61,134,307,321
기타특별회계	3,172,038,050	1,431,782,300	19,817,042			38,613,661,982

#### (2) 일반회계 세입

#####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정리보류액	다음연도 이월액
결 산 액	961,466,460,150	1,005,818,148,919	984,961,712,329	2,130,788,200	18,725,648,390
결산확인액	961,466,460,150	1,005,818,148,919	984,961,712,329	2,130,788,200	18,725,648,390
차 액	0	0	0	0	0

#####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수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수납계산서 금액	차 액
984,961,712,329	984,961,712,329	0

[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비율	징수결정 대비 수납 비율	징수결정 대비 정리보류 비율
2025	961,466	1,005,818	984,962	2,131	104.6	97.9	0.21
2024	860,301	902,856	882,139	805	104.9	97.7	0.09
증감	101,165	102,962	102,823	1,326	-0.3	0.2	0.12

[라]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정리보류액	다음연도 이월액	
<b>합 계</b>	<b>961,466,460,150</b>	<b>1,005,818,148,919</b>	<b>984,961,712,329</b>	<b>2,130,788,200</b>	<b>18,725,648,390</b>	
지방세	소 계	127,565,376,000	137,488,604,210	135,902,599,930	211,156,210	1,374,848,070
	등록면허세	9,480,863,000	13,933,428,300	13,845,800,520	0	87,627,780
	재산세	107,378,059,000	112,325,390,740	111,706,943,560	1,170,820	617,276,360
	지방소비세	10,304,367,000	9,940,748,270	9,940,748,270	0	0
	지난연도수입	402,087,000	1,289,036,900	409,107,580	209,985,390	669,943,930
세외수입	소 계	52,108,802,000	78,147,578,391	58,877,146,081	1,919,631,990	17,350,800,320
	재산임대수입	611,571,000	431,986,730	431,961,030	0	25,700
	사용료수입	10,959,431,000	10,990,528,960	10,975,327,510	0	15,201,450
	수수료수입	9,713,765,000	10,200,034,920	10,043,615,660	0	156,419,260
	사업수입	6,400,000	8,590,000	8,590,000	0	0
	징수교부금수입	15,325,916,000	15,518,594,771	15,518,594,771	0	0
	이자수입	2,536,765,000	3,523,168,770	3,523,168,770	0	0
	재산매각수입	85,406,000	58,147,440	58,147,440	0	0
	보조금반환수입	439,041,000	2,342,946,800	2,342,940,750	0	6,050
	기타수입	3,675,041,000	8,378,306,910	8,291,742,060	0	86,564,850
	과징금	45,124,000	450,278,420	87,528,420	0	362,750,000
	이행강제금	4,077,150,000	5,017,090,100	3,189,279,920	0	1,827,810,180
	변상금	228,643,000	328,131,100	255,278,130	0	72,852,970
	과태료	791,546,000	1,869,781,750	1,210,419,580	0	659,362,170
	환수금	0	58,473,970	55,565,770	0	2,908,200
부담금	445,560,000	11,263,200	11,263,200	0	0	
범칙금	18,700,000	18,720,000	18,720,000	0	0	
지난연도수입	3,148,743,000	18,941,534,550	2,855,003,070	1,919,631,990	14,166,899,490	
지방교부세	14,799,000,000	18,461,580,000	18,461,580,000	0	0	
조정교부금등	176,431,939,000	180,663,377,880	180,663,377,880	0	0	
보조금	444,873,901,000	443,975,876,940	443,975,876,940	0	0	
잉여금	64,120,047,000	64,120,047,143	64,120,047,143	0	0	
전년도이월금	47,421,259,150	47,421,260,265	47,421,260,265	0	0	
보조금등반환금	4,146,136,000	5,539,824,090	5,539,824,090	0	0	
전입금	30,000,000,000	30,000,000,000	30,000,000,000	0	0	

(3) 특별회계 세입

[가]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정리보류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59,157,554,820	66,148,443,270	59,825,258,910	304,964,470	6,018,219,890	
특별회계	소계	59,157,554,820	66,148,443,270	59,825,258,910	304,964,470	6,018,219,890
	의료급여	534,468,000	576,657,520	576,001,730	0	655,790
	주차장	58,623,086,820	65,571,785,750	59,249,257,180	304,964,470	6,017,564,100
결산확인액	59,157,554,820	66,148,443,270	59,825,258,910	304,964,470	6,018,219,890	
차액	0	0	0	0	0	

[나]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수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수납계산서 금액	차액
59,825,258,910	59,825,258,910	0

(4) 세입추계 및 결산 (일반회계)

[가] 총괄내역

[표4-1] 최근 3년간 세입 추계(지방세+세외수입)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계	173,283	183,087	9,804	105.7	175,916	192,188	16,272	109.2	179,674	194,780	15,106	108.4

[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계	173,283	183,087	9,804	105.7	175,916	192,188	16,272	109.2	179,674	194,780	15,106	108.4
지방세(계)	121,602	122,157	555	100.5	121,714	125,078	3,363	102.8	127,565	135,903	8,338	106.5
등록면허세	9,751	9,352	-399	95.9	9,197	10,216	1,019	111.1	9,481	13,846	4,365	146.0
재산세	101,537	103,043	1,506	101.5	102,480	104,529	2,049	102.0	107,378	111,707	4,329	104.0
지방소비세	9,914	9,412	-502	94.9	9,636	9,910	274	102.8	10,304	9,941	-363	96.5
지난연도	400	350	-50	87.5	401	422	21	105.2	402	409	7	101.7
세외수입(계)	51,681	60,930	9,249	117.9	54,202	67,110	12,908	123.8	52,109	58,877	6,768	113.0
경상적	38,619	42,052	3,433	108.9	39,747	44,533	4,786	112.0	39,154	40,501	1,347	103.4
임시적	7,157	13,705	6,548	191.5	8,766	17,901	9,135	204.2	4,199	10,693	6,494	254.7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5,905	5,173	-732	87.6	5,689	4,676	-1,013	82.2	5,607	4,828	-779	86.1
지난연도									3,149	2,855	-294	90.7

## 분석 및 의견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8.4%로 총 151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지방세의 전체 수납률은 106.5%로 그 중 등록면허세는 146.0%의 수납률을 보이며 44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자양동 이스트폴 등 대형건축물 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세외수입은 전체 수납률이 113.0%로 68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규 발생 둔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금고출연금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초과수입 발생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5) 세입징수실적 (일반회계)

#### [가] 지방세

광진구의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8조)

[표4-2] 최근 3년간 구세(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세 목		2023		2024		2025	
		징수액	비율	징수액	비율	징수액	비율
구 세 (지방세)	소 계	112,395	100.0	114,745	100.0	125,553	100.0
	재 산 세	103,043	91.7	104,529	91.1	111,707	89.0
	등 록 면 허 세	9,352	8.3	10,216	8.9	13,846	11.0
직 원 수		18		21		21	

## 분석 및 의견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재산세 징수액이 7,17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대형 건축물 분양 등에 따른 저당권 설정 증가로 등록면허세가 3,630백만원 증가하여 구세 총 징수액이 10,808백만원 증가함.

## [나]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이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15호, 2025. 12. 16.)」 [별표8] ‘세입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외수입에 관한 규정>

[표4-3]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예산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예산현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합 계	51,681	60,930	117.9	54,202	67,110	123.8	52,109	58,877	113.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8,619	42,052	108.9	39,747	44,533	112.0	39,154	40,501	103.4
임 시 적 세 외 수 입	7,157	13,705	191.5	8,766	17,901	204.2	4,199	10,693	254.7
지방행정제재 · 부 과 금	5,905	5,173	87.6	5,689	4,676	82.2	5,607	4,828	86.1
지난연도 수입*							3,149	2,855	90.7

\* 2023~2024회계연도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

## 1) 공유재산 매각현황

### ○ 매각방법

-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 원 칙 : 일반경쟁
- ▶ 예 외 : 지명경쟁, 수의계약
- ▶ 매각가격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표4-4] 2025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

(단위 : m<sup>2</sup>, 원)

연번	대 상 지	면 적	2025년도 세입 (매각금액)	비 고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공시지가 이하)

(단위: 천원)

연번	소재지	매각대금	면적(m <sup>2</sup> )	m <sup>2</sup> 당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매각-공시지가
해당사항 없음.						

## 2) 체납액 관리현황 (일반회계)

[표4-5] 최근 5년간 체납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세	소 계	773	929	1,250	1,320	1,586
	체납액	735	918	1,094	1,230	1,375
	결손액	38	11	156	90	211
부서별담당인원		8	8	7	7	7
세외수입	소 계	19,455	19,572	20,702	19,367	19,271
	체납액	18,313	18,872	18,858	18,652	17,351
	결손액	1,142	700	1,844	715	1,920
부서별 담당인원		5	5	5	6	5
지방세+세외수입		20,228	20,501	21,952	20,687	20,857

### 분석 및 의견

2025년 광진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14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2025년 경제성장률이 1.0%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납세자의 소득 및 영업환경이 악화된 데 기인함. 특히 고액체납자의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한 납부 지연 및 체납 지속이 주요 증가 요인임. 2025년 세외수입은 부동산·차량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 정리로 결손액은 증가하고 체납액은 감소함.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체납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경제적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적극 유도하여 자진 납부를 촉진해야 함. 또한 카카오톡 알림톡 등 비대면 안내 수단을 활용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정리를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함. 아울러 신규 발생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납부 독려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전반적인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이 필요함.

(6)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 실적

[표4-6] 최근 5년간 지방세 지출(비과세, 감면)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 과 세 감면액(A)	소 계	47,561	53,151	50,505	51,297	53,882
	비과세	35,064	39,399	37,330	37,966	40,250
	감 면	12,497	13,752	13,175	13,331	13,632
지방세징수액(B)		49,986	58,330	54,236	57,160	64,823
비과세 감면율(A/A+B)		48.8%	47.7%	48.2%	47.3%	45.4%

현 황 분 석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서울시의 임대주택 취득, 광진구의 공공청사 취득 등으로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액)이 전년대비 2,585백만원 증가함.

나. 세출

(1)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922,057,031,000	961,466,460,150	890,701,389,248	23,334,585,346	47,430,485,556
결산확인액	922,057,031,000	961,466,460,150	890,701,389,248	23,334,585,346	47,430,485,556
차 액	0	0	0	0	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90,701,389,248	890,701,389,248	0

(3)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응액
합 계	46,787,238,000	59,157,554,820	16,587,959,536	4,603,820,350	37,965,774,93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4,468,000	534,468,000	514,649,308	0	19,818,692
주차장 특별회계	46,252,770,000	58,623,086,820	16,073,310,228	4,603,820,350	37,945,956,242

(4)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6,587,959,536	16,587,959,536	0

(5) 장기계속사업 운용 현황

[법적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표5-1] 장기계속사업과 계속사업비의 비교

구 분	장기계속사업	계속비사업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제24조	좌동
수의계약 여부	입찰원칙(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공고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좌동
대상사업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	좌동
계약기간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계약 체결 및 이행	총 사업금액으로 입찰·계약
계약금액	총금액 중 해당연도 확보 예산 금액	확보된 총예산 금액

[표5-2] 장기계속사업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총계약금액	집행액	계약방법				비고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2인 이상견적	수의1인 견적	
합계	19	94,616	61,390	6	11	1	1	
공사	5	29,450	22,465	1	4	0	0	
용역	14	65,166	38,925	5	7	1	1	
물품	0	0	0	0	0	0	0	

[표5-3] 장기계속사업 (공사)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계약명	계약일자	최초총괄금액	총계약금액	기지금액	준공예정일자	계약방법	업체명
1	2021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 시설 건립공사	2021. 6. 7.	21,103	26,029	21,623	2026. 6. 19.	제한 경쟁	(주)신화건설 세현건설(주) (주)호연종합건설 (주)우리문화재보존연구소 일일종합건설(주) (공동도급)
2	2021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 시설 건립공사 (전기공사)	2021. 11. 22.	679	786	473	2026. 6. 19.	제한 경쟁	(주)남두
3	2021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 시설 건립공사 (정보통신공사)	2021. 11. 22.	157	157	94	2026. 6. 19.	제한 경쟁	케이씨티정보통신(주)
4	2021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 시설 건립공사 (소방공사)	2021. 11. 22.	136	129	92	2026. 6. 19.	제한 경쟁	(주)근영이앤씨
5	2025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공사 (건축, 토목, 기계)	2025. 12. 31.	2,349	2,349	183	2026. 11. 30.	일반 경쟁	(주)디자인 에너지

[표5-4] 장기계속사업 (용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계약명	계약일자	최초 총괄금액	총계약 금액	기지금액	준공 예정일자	계약 방법	업체명
1	2021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 책임감리 용역	2021. 5. 17.	1,628	2,348	1,898	2026. 7. 19.	제한 경쟁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양건설 제이비엔지니어링(주)
2	2022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2. 12. 16.	64	64	36	2026. 6. 19.	전자 수의	(주)씨.에스 (주)상우이디아이 (분담이행)
3	2023	아차산역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2023. 4. 27.	738	738	668	2026. 12. 20.	일반 경쟁	어반플랫폼주식회사 (주)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분담이행)
4	2023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1구역)	2023. 12. 5.	12,129	12,449	8,022	2026. 12. 31.	제한 경쟁	(주)대아이디아이 (광진구지점)
5	2023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2구역)	2023. 12. 11.	13,460	13,901	8,988	2026. 12. 31.	제한 경쟁	(주)로칼크린
6	2023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3구역)	2023. 11. 28.	13,467	13,698	8,790	2026. 12. 31.	제한 경쟁	(주)경동사
7	2023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4구역)	2023. 12. 11.	11,054	11,352	7,314	2026. 12. 31.	제한 경쟁	(주)장수환경
8	2024	광나루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2024. 8. 30.	276	276	150	2026. 12. 31.	제한 경쟁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지아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분담이행)
9	2024	2025~2026년 CCTV 통합유지관리	2024. 12. 30.	2,032	2,066	1,200	2026. 12. 31.	제한 경쟁	(주)글로벌텔레콤
10	2025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2025. 3. 12.	482	482	300	2026. 9. 7.	일반 경쟁	(주)다음이에이 건축사사무소
11	2025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사업 설계용역	2025. 6. 25.	2,168	2,168	1,409	2026. 9. 17.	수의 계약 (공모 당선자)	주식회사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일엘씨 주식회사 우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2	2025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 용역	2025. 9. 26.	520	520	150	2027. 9. 25.	일반 경쟁	(주)인토펜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3	2026	2026~2028년 공공처리 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025. 12. 11.	3,589	3,589	0	2028. 12. 31.	일반 경쟁	티와이산업 주식회사 그린씨비스 (주)엔씨알
14	2026	2026~2028년 일반생활 폐기물 종량제봉투 위탁 처리용역	2026. 1. 26.	1,515	1,515	0	2028. 12. 31.	일반 경쟁	평택환경(주) 제이원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창

○ 장기계속사업 (물품) : 해당 없음.

○ 장기계속사업의 계속비 사업전환 : 해당 없음.

**(6) 지방보조금 사업**

**[가] 법적근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운영비'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설정]**

1. 적용대상 : 민간보조금 6개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 적용기준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구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수 구비 사업
3. 산 정 :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 × (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나] 예산현황**

**[표6-1]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총액	국비	시비	구비
계	113,420	23,664	43,621	46,135
일반회계	113,420	23,664	43,621	46,135
특별회계	0	0	0	0

※ 보조금 중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과 교육예산지원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보조금 예산현황임.

[표6-2] 2025년 민간지원 지방보조금 : 예산현액(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9.59%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전체	보조금 총액한도 <sup>20)</sup> 대상
계 <sup>21)</sup>	97,878	23,457	43,204	31,217	9,545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3,330	596	666	2,068	1,717
민 간 단 체 운 영 비 보 조	1,811	320	338	1,153	992
민 간 행 사 사 업 보 조	940	-	10	930	90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6,318	15,027	33,134	18,157	3,496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23,385	7,492	8,294	7,599	1,443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1,917	22	762	1,133	989
운 수 업 계 보 조 금	177	-	-	177	-

※ 2025년 광진구 지방보조금 한도액 대비 지방보조금(순수구비) 편성 비율 : 98.1%

[다] 집행현황

[표6-3] 2025년 지방보조금 자체보조사업 총괄 집행현황

집행액 (백만원)	합 계 (A=B+C)		단 체 (B)		개 인 (C)	
	사업수	개소 및 명	사업수	개소	사업수	명
8,877	157	13,760	152	1,742	5	12,018

※ 자체보조사업 보조금 집행률은 93.0%임.

[표6-4] 2025년 지방보조금 자체보조사업 통계목별 집행현황

통 계 목	집행액 (백만원)	합 계 (A=B+C)		단 체 (B)		개 인 (C)	
		사업수	개소 및 명	사업수	개소	사업수	명
계	8,877	157	13,760	152	1,742	5	12,018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606	53	176	53	176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82	26	36	26	36	-	-
민 간 행 사 사 업 보 조	824	22	56	22	56	-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89	35	2,207	34	1,138	1	1,069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1,348	14	11,155	10	206	4	10,949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928	7	130	7	130	-	-

※ 통계목별 교부단체 중복 있음.

20) 2025년 광진구 지방보조금 한도액 : 9,725백만원(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1)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및 교육예산지원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민간지원보조금 예산현황

[표6-5]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723,969	799,442	781,956	770,598	890,701
지방보조금 (민간)	88,913	85,098	86,080	90,215	94,874
비 율(%)	12.3	10.6	11.0	11.7	10.7

### 분석 및 의견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상황,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 등을 면밀히 검토·점검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 (7) 예산의 이용·이체, 전용

-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체는 1건, 955천원 발생하였으며, 전용은 33건, 574,809천원으로 전년 대비 360,382천원 증가함.(※ 예산의 이용은 없음.)
-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체는 장학회 업무 이관에 따른 것이며, 예산 전용의 주된 사유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 부족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 [가] 이용·이체

##### [법적근거]

#####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표7-1] 2025회계연도 예산이체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 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 잔액 (D=A-B-C)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총 1건)			955	955	955	955	955	0	0
1	아동청소년과	장학회 운영	사무관리비	955	955	0	0	0	0	0
	교육지원과	장학회 운영	사무관리비	0	0	955	955	955	0	0

[나] 전용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참고]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참고] 전용금지 경비

-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 2.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표7-2] 2025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 번	과 목			예산액	전용 금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 잔액 (D=A-B-C)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총 33건)			2,047,181	574,809	5,202,243	4,735,971	336,312	129,960
1	지역경제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3,000	50,000	53,000	49,407	0	3,593
2	일자리청년과	노동복지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520	3,520	7,040	6,725	0	315
3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무관리비	8,200	7,760	15,960	8,299	6,450	1,211
4	문화예술과	간헐골 축제	행사실비지원금	0	1,200	1,200	1,200	0	0
5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0	10,000	10,900	10,898	0	2
6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900				
7	교육지원과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	시설비	0	141,247	3,201,247	3,120,017	0	81,230
8	교육지원과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	시설비	141,247	60,000				

연 번	과 목			예산액	전용 금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 잔액 (D=A-B-C)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9	평생교육과	구립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2,000	400	2,400	2,397	0	3
10	평생교육과	구립도서관 운영	시설비	328,060	10,000	338,060	48,241	289,422	397
11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시설비	213,000	11,000	349,000	316,624	31,061	1,315
12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시설비	224,000	125,000				
13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무관리비	11,248	7,000	18,248	17,619	0	629
14	복지정책과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시설비	56,170	3,080	59,250	59,250	0	0
15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	공공운영비	92,310	1,000	93,310	83,180	0	10,130
16	사회복지 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시설 지원	시설비	10,000	10,000	20,000	16,921	0	3,079
17	사회복지 장애인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사무관리비	36,300	6,500	52,800	52,470	0	330
18	사회복지 장애인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사무관리비	42,800	10,000				
19	사회복지 장애인과	인력운영비(사회복지장애인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8,740	5,980	54,720	54,329	0	391
20	사회복지 장애인과	인력운영비(사회복지장애인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069	900	2,969	2,238	0	731
21	어르신복지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시설비	16,000	3,700	19,700	19,669	0	31
22	가정복지과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379	1,000	10,379	993	9,379	7
23	청소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 효율적 운영	시설비	50,000	21,627	71,627	70,346	0	1,281
24	환경과	환경모범도시광진	행사운영비	39,000	480	39,480	39,471	0	9
25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4,676	1,800	56,476	51,781	0	4,695
26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955	4,357	96,312	93,444	0	2,868
27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0	5,000	5,000	4,719	0	281
28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6,158	1,200	177,358	177,007	0	351
29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기타자본이전	0	1,700	10,000	10,000	0	0
30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기타자본이전	1,700	8,300				
31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사무관리비	5,972	22,000	27,972	12,891	0	15,081
32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시설비	0	38,000	38,000	36,000	0	2,000
33	보건의료과	국가 암검진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69,677	158	369,835	369,835	0	0

## 분석 및 의견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편성목 간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음. 전용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나,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 금액과 그 사유를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여야 함.

- 예산 전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한 번 전용한 예산을 재전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인건비와 상환금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전용 또한 금지됨. 특히, 예산 성립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삭감한 항목을 전용으로 확보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는 예산 원칙에 위배되므로 유의가 필요함.
- 예산 전용을 시행하기 전에는 초과 지출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전용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후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야 함.

## (8) 민간위탁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총괄내역

[표8-1]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총괄 집행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계	57	50,916	53,135	51,175	0	1,960

[다] 세부내역

[표8-2]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세부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법적근거
계				50,916	53,135	51,175	0	1,960	
1	지역경제과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65	165	165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 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2	일자리청년과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60	360	300	0	60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	일자리청년과	서울청년센터 광진 운영	민간위탁금	563	563	563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4	일자리청년과	서울청년센터 광진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4	4	4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5	일자리청년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금	0	599	599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6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01	101	101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법적근거
7	교육지원과	내일의 진로찾기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90	316	316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8	평생교육과	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50	50	47	0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9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민간위탁금	422	422	404	0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0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3,881	3,879	3,819	0	6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1	복지정책과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189	189	189	0	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2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0	263	263	0	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3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	민간위탁금	16	16	16	0	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4	복지정책과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90	187	183	0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5	복지정책과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0	32	32	0	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6	사회복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90	737	723	0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17	어르신복지과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3	113	110	0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8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지원	민간위탁금	609	609	609	0	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9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30	30	30	0	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0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 사업비	27	417	400	0	17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1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85	346	346	0	0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2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795	1,795	1,795	0	0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23	가정복지과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민간위탁금	664	690	683	0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24	가정복지과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220	220	205	0	15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25	가정복지과	아이돌봄지원	민간위탁금	3,797	3,797	3,545	0	252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26	가정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금	122	123	123	0	0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27	가정복지과	공동육아방 운영	민간위탁금	143	143	140	0	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8	가정복지과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17	514	511	0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9	가정복지과	서울가족학교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54	57	57	0	0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30	가정복지과	출생지원정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13	13	13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27조
31	가정복지과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617	644	644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32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정착 자립지원 강화사업	민간위탁금	29	29	29	0	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33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0	519	519	0	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34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민간위탁금	0	207	207	0	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35	가정복지과	광진 글로벌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2	12	12	0	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36	아동청소년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503	511	486	0	2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법적근거
37	아동청소년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3	23	23	0	0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38	아동청소년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민간위탁금	1,503	1,617	1,567	0	50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39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금	312	312	280	0	32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4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51	351	351	0	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41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94	94	94	0	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42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80	80	80	0	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43	아동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운영	민간위탁금	172	172	172	0	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44	아동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급식지원	민간위탁금	23	23	23	0	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45	청소과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0	30	30	0	0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6
46	청소과	청소대행업체 관리	민간위탁금	17,740	17,791	17,784	0	7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7	청소과	대형 및 민원성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076	3,024	2,360	0	665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6
48	청소과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	민간위탁금	3,124	3,124	3,058	0	66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6
49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4,104	4,094	3,482	0	612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6
50	교통지도과	견인대행 및 견인보관소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398	246	203	0	43	도로교통법 제36조
51	보건정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70	70	70	0	0	지역보건법 제4조, 제23조
52	보건위생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53	753	753	0	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53	건강관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1,315	1,315	1,315	0	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54	건강관리과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249	1,216	1,216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55	건강관리과	치매 공공후견 지원	민간위탁금	6	6	6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56	건강관리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53	53	53	0	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57	건강관리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	69	69	69	0	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분석 및 의견

- 광진구는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으로 총 57개 사업에 50,916백만원을 본 예산 편성하여 이월금 등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53,135백만원 중 51,175백만원 (96.3%) 집행하였음. 전년 대비 3개 사업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은 3,660백만원 증가, 집행률은 1.4%포인트 증가하였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근거로는 개별 법률 15건, 조례 12건이 있음.

- 민간위탁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집행 증빙서류 구비 소홀, 시설공사 (기능 보강사업) 준공검사 소홀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환수 등 철저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 3. 계속비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3조

**[의무적 계속비 편성사업]**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계속사업)으로서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42조)

[나] 2025년 실적

(단위 : 천원)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해당사항 없음			

## 4. 명시이월비

### [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나] 총괄내역

[표9-1]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총괄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부 서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합 계		71	48,412	23,284	20,842
계(일반회계)		69	41,187	20,659	17,670
1	자 치 행 정 과	1	800	0	800
2	지 역 경 제 과	2	4,629	3,237	1,259
3	일 자 리 청 년 과	7	1,078	164	335
4	문 화 예 술 과	7	1,700	18	1,680
5	체 육 진 흥 과	12	4,183	2,354	1,152
6	평 생 교 육 과	4	702	264	428
7	복 지 정 책 과	1	349	317	31
8	어 르 신 복 지 과	4	2,691	936	1,478
9	가 정 복 지 과	4	31	6	25
10	청 소 과	2	10,698	9,922	516
11	주 거 사 업 과	2	2,547	438	1,294
12	교 통 행 정 과	1	43	19	24
13	도 로 과	8	4,549	241	4,308
14	치 수 과	1	1,824	1,446	300
15	공 원 녹 지 과	6	5,175	1,295	3,854
16	보 건 의 료 과	1	22	2	20
17	보 건 지 소	6	166	0	166
계(주차장특별회계)		2	7,225	2,625	3,172
18	교 통 지 도 과	2	7,225	2,625	3,172

[다] 세부내역

[표9-2]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명시이월액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 번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44,283	20,661	19,945	
1	자치행정과	광장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800	0	800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
2	지역경제과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65	829	220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2025.11.26.) 시 2026년으로 이월 집행 명시
3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시설비	3,565	2,408	1,039	본공사 발주 전 선행 필수작업(공사),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2026년 예산집행 예정
4	일자리청년과	청년복지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2	0	282	광진구 청년복지관 조성지는 공공기여시설로 본 건물 공사 일정(2025.12. 준공예정)에 맞춰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구매 예정
5	문화예술과	자양로 불빛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30	0	23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2025.12.23.)으로 연내 사업 추진 어려움
6	문화예술과	옛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	140	0	140	연말 특교금 교부로 인해 명시이월 불가피함
7	문화예술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지원	시설비	1,200	18	1,180	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추진 완료 어려움
8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812	2,315	822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이용률이 낮은 동절기(1~2월)에 인조잔디 교체, 중곡문화체육센터 온수풀 및 차염방지 시스템 제작 기간 60일 이상 소요
9	평생교육과	구립도서관 운영	시설비	338	48	289	특별교부세가 2025.12월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여 순차적 사업 추진,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특교금) 관련 추가 비용 이월
10	평생교육과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9	102	106	특별조정교부금이 2025.9월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여 순차적 사업 추진
11	어르신복지과	중곡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1,000	0	1,000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지연으로 2026.7월 이후 공사 진행예정이므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12	어르신복지과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광진구-경로당4동)	시설비	877	187	449	24년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4.6월 총 4개 경로당(구의새마을, 노유산, 소능, 장수)이 선정되어 계획된 사업기간(2025.7월~2026.6월)에 따라 설계 및 공사 진행예정이므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임
13	청소과	인력운영비(환경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477	9,743	488	서울시-서울시노조 환경공무원 통상임금 소급지급 합의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2025.12.24. 교부되어 2026년 지급을 위한 이월조치
14	주거사업과	정비사업 공공지원	연구용역비	2,490	430	1,276	2027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므로 예산집행 시점에 맞추어 사용 예정
15	도로과	화양동 67-2~110-11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00	0	200	특별교부세 예산 교부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금년 사업 시행이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16	도로과	자양강변길 노후 도로 포장공사	시설비	426	0	426	사업구간 내 시내버스가 있어 우회노선 협의 (30일 이상) 필요하여 금년도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17	도로과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환경 및 거리경관 개선	시설비	403	0	403	가로경관과에서 시행하는 건대입구역 일대 거리가게 정비 지연으로 인해 보도정비 불가하여 명시이월

연 번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18	도로과	고지대 이동 약자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1,964	0	1,964	특교금 교부 지연(2025.11.27.)에 따른 금년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19	도로과	긴고랑로 115~172-2 노후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600	0	600	특별교부세 예산 교부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금년 사업 시행이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20	도로과	관내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시설비	356	0	356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금년 사업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21	도로과	자양변영로 12~35 노후보도 정비공사	시설비	300	0	300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교부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금년 사업 시행 불가하여 명시이월
22	치수과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준설사업	시설비	1,824	1,446	300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2025.12.24.)에 따른 명시이월
23	공원녹지과	야간 힐링정원 조성 경관조명 공사	시설비	200	0	200	야간 힐링정원 조성 경관조명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2025년 하반기 교부(2025.12.24.)되어 연내 집행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함
24	공원녹지과	화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300	0	300	화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25년 하반기 교부(2025.12.24.)되어 연내 집행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함
25	공원녹지과	녹지대 및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	시설비	2,567	510	2,050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 불가
26	공원녹지과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매력정원조성	시설비	950	0	950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 불가
27	공원녹지과	광진구 특화정원 조성	시설비	300	0	300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 불가
28	보건지소	건강장수센터 운영 (특별조정교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3	0	103	통합돌봄 대비 2026년 건강장수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 교부됨
29	교통지도과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 주차장 입체화 건설	시설비	4,797	1,382	1,987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026.6.)
30	교통지도과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2,428	1,243	1,185	용역 완수기한(2026.6.12.) 미도래

## 5. 사고이월비

### [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등은 사고이월비로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나] 총괄내역

[표10-1]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총괄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부 서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합 계		36	32,034	18,511	7,095
계(일반회계)		34	27,206	17,124	5,663
1	지 역 경 제 과	1	843	662	152
2	일 자 리 청 년 과	4	989	116	581
3	문 화 예 술 과	6	8,499	6,340	2,137
4	체 육 진 흥 과	2	3,823	2,320	577
5	교 육 지 원 과	1	640	448	192
6	어 르 신 복 지 과	2	1,193	382	298
7	가 정 복 지 과	1	19	18	1
8	가 로 경 관 과	2	401	292	83
9	주 거 사 업 과	3	3,367	795	405
10	도 시 계 획 과	3	1,052	703	299
11	도 로 과	6	3,939	2,837	848
12	치 수 과	2	2,378	2,155	84
13	보 건 정 책 과	1	63	56	6
계(주차장특별회계)		2	4,828	1,387	1,432
14	교 통 지 도 과	2	4,828	1,387	1,432

[다] 세부내역

[표10-2]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32,034	18,511	7,095	
1	지역경제과	봉제산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843	662	152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3차년도 용역계약 잔금 이월

연 번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2	일자리청년과	청년복지관 조성	시설비	611	116	494	광진구 청년복지관 조성지는 공공기여시설로 본 건물 공사 준공 예정일(당초 2025.7월 → 변경 2026.2월)에 맞춰 청년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2025.12월 착공하여 2026.2월 준공 예정
3	일자리청년과	청년복지관 조성	감리비	12	0	3	광진구 청년복지관 조성지는 공공기여시설로 본 건물 공사 준공 예정일(당초 2025.7월 → 변경 2026.2월)에 맞춰 청년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2025.12월 착공하여 2026.2월 준공 예정
4	일자리청년과	청년복지관 조성	시설부대비	4	0	4	광진구 청년복지관 조성지는 공공기여시설로 본 건물 공사 준공 예정일(당초 2025.7월 → 변경 2026.2월)에 맞춰 청년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2025.12월 착공하여 2026.2월 준공 예정
5	일자리청년과	청년복지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2	0	80	광진구 청년복지관 조성지는 공공기여시설로 본 건물 공사 준공 예정일(당초 2025.7월 → 변경 2026.2월)에 맞춰 청년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2025.12월 착공하여 2026.2월 준공 예정
6	문화예술과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1,562	724	838	2026.1.31. 준공 예정
7	문화예술과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리비	31	0	20	2026.1.31. 준공 예정
8	문화예술과	광진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	14	147	2026.1.31. 준공 예정
9	문화예술과	아차산 해맞이 축제	사무관리비	55	27	28	행사일 미도래
10	문화예술과	아차산 해맞이 축제	행사운영비	38	16	21	행사일 미도래
11	문화예술과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시설비	6,643	5,559	1,083	장기 4차 준공 기한(2026.4월)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12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812	2,315	572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한 공정(식재, 아스팔트 포장)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 후 공사 재개
13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감리비	11	5	5	계약기간 만료기한이 2025.12.28.임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 불가
14	교육지원과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640	448	192	체험관 조성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실제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까지 포함한 2026.2.28.까지 운영기간 연장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며, 용역 완수 후 잔금(이월액) 지급 예정
15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시설비	316	195	58	2025.12.25. 준공되었으며, 2026.1월 소방공사비, 감리용역비 지급예정(건축비 39,314,600원 2025.12.30. 字 지급예정)
16	어르신복지과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광진구-경로당4동)	시설비	877	187	240	23년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5.8월 완료되었으며, 이후 24년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하여 사업기간(2025.7월~2026.6월)에 따라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함.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 추진
17	가정복지과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계원)	19	18	1	신청기한이 촉박한 12월생 아이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첫돌사진 촬영비 소급 지급
18	가로경관과	가로정비	사무관리비	163	127	22	노점상들의 불법 점유 시위로 인해 집행 불가, 대화 및 협상 후 2026년 집행 예정
19	가로경관과	가로정비	시설비	238	165	61	노점상들의 불법 점유 시위로 인해 집행 불가, 대화 및 협상 후 2026년 집행 예정
20	주거사업과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무관리비	57	8	23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 집행시기에 맞춰 사용 예정
21	주거사업과	정비사업 공공지원	연구용역비	2,490	430	200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 집행시기에 맞춰 사용 예정
22	주거사업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20	357	182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 집행시기에 맞춰 사용 예정

연 번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23	도시계획과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12	132	70	용역기간 연장(~2026.12.20.)
24	도시계획과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210	60	126	준공기한 연기(2025.9월)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 처리
25	도시계획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추진	연구용역비	630	511	103	용역 완수기한(2026.6월) 미도래하여 추후 변경(안) 입안 및 공람공고 등 절차 이행을 위해 사고이월
26	도로과	제설대책 및 도로 기동반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40	149	65	집행시기 미도래
27	도로과	제설대책 및 도로 기동반 운영관리	시설비	699	200	499	25/26년 제설대책 추진(2025.11.15.~2026.3.15.)에 따른 사고이월
28	도로과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705	655	50	공사 지연 및 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29	도로과	자양변영로 노후보도 정비	시설비	550	429	113	공사 지연 및 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30	도로과	영화사로 외 2개소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시설비	1,650	1,352	78	조달청 계약지연 및 동절기 포장일정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설치가 어려워 이월
31	도로과	건고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시설비	95	52	43	용역 중간보고회 시 추가 검토사항 및 유관부서 연계사업 재검토 사항 발생하여 용역 준공기한 2026. 4월로 연기함에 따른 사고이월
32	치수과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시설비	2,310	2,104	72	준공기한 미도래
33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68	51	12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2026.1월)
34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사무관리비	63	56	6	2026년 변경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
35	교통지도과	배너무터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31	5	3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2026.12월)
36	교통지도과	긴고량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	시설비	4,797	1,382	1,429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 6. 예비비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표11-1]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편성액	편성비율	지출결정액	사용비율
2025	922,057	8,643 (7,445)	0.94% (0.81%)	3,074	35.57%

※ ( ) : 일반예비비

[표11-2] 예비비 사용내역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 번	과 목			지 출 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 잔액 (C=A-B)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3,074	3,046	27			
1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운영	사무관리비	15	11	4	2025-05-13	2025-06-10	구내식당 조리인력 추가배치를 위한 예산확보
2	자치행정과	선거사무 추진	사무관리비	9	7	1	2025-05-02	2025-05-07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
3	자치행정과	선거사무 추진	국내여비	3	1	2	2025-05-02	2025-06-12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
4	문화예술과	KBS 전국노래자랑	사무관리비	15	15	0	2025-05-13	2025-05-15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예산 확보
5	문화예술과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	35	35	0	2025-05-13	2025-05-16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예산 확보
6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5	1	4	2025-02-13	2025-03-11	자양1동 구립 중앙경로당 임차 부대경비 지급
7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기타자본이전	795	795	0	2025-02-13	2025-02-13	자양1동 구립 중앙경로당 임차보증금 지급
8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22	21	1	2025-03-20	2025-05-23	구의2동 72-8 어린이집 증설부지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지급
9	청소과	인력운영비(환경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48	148	0	2025-06-05	2025-06-10	환경공무원 임금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방침에 따른 체불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10	청소과	인력운영비(환경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46	1,046	0	2025-08-29	2025-09-01	환경공무원 임금소송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체불수당 지급
11	청소과	인력운영비(환경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38	338	0	2025-12-17	2025-12-18	환경공무원 임금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방침에 따른 체불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12	청소과	인력운영비(환경공무원)	배상금등	420	420	0	2025-08-29	2025-09-01	환경공무원 임금소송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13	청소과	인력운영비(환경공무원)	배상금등	144	144	0	2025-12-17	2025-12-18	환경공무원 임금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방침에 따른 체불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14	가로경관과	가로정비	사무관리비	10	0	10	2025-11-07		관내 불법 거리가게 정비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15	가로경관과	가로정비	시설비	40	35	5	2025-11-07	2025-12-01	관내 불법 거리가게 정비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16	도시계획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추진	연구용역비	22	22	0	2025-04-28	2025-11-07	도시재생사업(혁신지구) 공모추진을 위한 용역비 확보
17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시설비	8	8	0	2025-04-01	2025-04-21	구의역 1번출구 마을버스 BTT정류소 이설 예산 확보

분석 및 의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부득이한 지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람.

- 예비비는 총액을 지방의회에서 사전결의를 받음으로써 세부지출항목에 대한 의결은 생략하는바,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이 되는 경우 예비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과 시기, 적절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변경제도를 활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7. 성과보고서

### [법적근거]

- ▶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함.
- ▶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시·도의 경우,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지방보조사업(「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표12]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국명	부 서 명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수	달성률 [(B/A)×100]
계		11	54	156	140	16	90
	감 사 담 당 관	1	1	4	4	0	100
	홍 보 담 당 관	1	1	3	3	0	100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국명	부 서 명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수	달성률 [(B/A)×100]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1	1	4	2	2	50
	자치행정과		1	3	2	1	67
	민원여권과		1	2	2	0	100
	재무과		1	3	3	0	100
	스마트정보과		3	6	6	0	100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1	1	4	4	0	100
	지역경제과		1	5	5	0	100
	일자리청년과		1	4	4	0	100
	세무1과		1	3	2	1	67
	세무2과		1	2	1	1	50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1	1	3	3	0	100
	체육진흥과		1	3	2	1	67
	교육지원과		1	4	4	0	100
	평생교육과		3	3	3	0	100
복지국	복지정책과	1	1	3	3	0	100
	사회복지과		2	5	4	1	80
	어르신복지과		3	6	6	0	100
	가정복지과		3	5	5	0	100
	아동청소년과		2	5	3	2	60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1	2	4	4	0	100
	청소과		1	3	3	0	100
	환경과		2	4	3	1	75
	가로경관과		1	4	3	1	75
미래도시국	주택과	1	1	4	3	1	75
	주거사업과		1	3	3	0	100
	도시계획과		2	5	5	0	100
	건축과		1	6	6	0	100
	부동산정보과		1	4	4	0	100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1	1	4	4	0	100
	교통지도과		1	4	3	1	75
	도로과		1	3	3	0	100
	치수과		1	4	4	0	100
	공원녹지과		1	4	4	0	100
보건소	보건정책과	1	1	3	3	0	100
	보건위생과		1	3	3	0	100
	보건의료과		1	4	3	1	75
	건강관리과		1	3	3	0	100
	보건지소		1	3	2	1	67
의회사무국		1	1	4	3	1	75

## 분석 및 의견

- 광진구는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 · 소통 · 친절’이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1개의 전략목표와 54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중심으로 156개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성과평가를 한 결과 이중 140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주의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별 지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나, 실제 설정된 성과지표를 검토한 결과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기에는 불합리한 성과지표가 있었고,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설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바라며, 정책사업 목표별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을 제고해주시기 바람.

## 8.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

### 가. 채권 및 채무

#### (1) 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 임대차 채권, 용자채권 등을 말함.

#### [가] 보증금채권

- 보증금채권은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청사건물 임차 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기타 선수금 등이 해당
  - ※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채권에서 제외[공유재산(용익물권)으로 별도 관리]
-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 [나] 용자금채권

- 용자금채권은 자금을 용자해 준 후 만기 도래 시 용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을 말하여 이에는 용자목적에 따라 주택사업용자금, 의료보호기금용자금, 학자금용자금 등이 해당
- 자치단체가 법인, 개인 기타 제3자에게 빌려주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채권

#### [다] 미수금채권(재산매각 및 사용 등 관련채권)

-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수년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채권
  - 미수금채권은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이 해당
  - ※ 보증금·용자금채권 등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증금·용자금채권 등에서 관리

**[라] 기타채권**

○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채권 등이 해당함.

※ 적용제외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표13-1]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25년도 현 재 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0,603	-476	8,117	8,593	20,128
일 반 회 계	8,259	-210	353	563	8,049
특 별 회 계	30	0	0	0	30
기 금	12,315	-266	7,764	8,030	12,050

**[표13-2] 회계별 채권 현황**

(단위 : 원)

구 분	채 권 금 액
합 계	20,127,702,721
일반회계	8,048,551,356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576,165
기 금	12,049,575,200

[표13-3] 최근 5년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금 액	15,415	15,335	19,934	20,603	20,128

(2) 채무

[가] 법적근거 : 지방채증권(해외채 포함),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을 파악하여 작성(「지방재정법」 제8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나] 채무관리보고서의 범위

- 채무관리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을 대상으로 작성
- 그 밖의 금전지급 목적의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부채(선수금, 선수수익 등), 세입세출외 보관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작성

[다] 지방채무와 보증채무부담 행위의 구분

- 지방채무 = 지방채증권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채무자의 과산 등으로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 보증 채무부담행위는 지방 채무에 포함된 보증 채무이행 책임액을 제외한 금액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 ① 채권(부채)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부채)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부채)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부채)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부채)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③ 삭제 <2014. 5. 28.>
-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부채)의 범위, 채권(부채)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부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재정법」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함.
-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됨.
-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함.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봄.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함.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표14-1]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2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			
특별회계					

[표14-2] 최근 5년간 채무 현황(기준연도별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채무현황	-	-	-	-	-
인구수(명)	339,996	337,416	335,554	331,963	331,167
주민1인당 채무	-	-	-	-	-

## 나. 공유재산

### [법적근거]

####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용도별, 종류별로 작성

#### (가) 행정재산

- 1)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단,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역물권 포함
- 2)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문화회관, 도로, 하천 등)
- 3)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단, 기타특별회계는 제외
- 4)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 등)

(나)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 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며, 용도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함.

(나) 건물 : 「건축법」상 건물

- 1) 보일러, 승강기, 냉·난방설비, 조명기기, 창틀 등 건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되지 않는 물건 포함
- 2) 담장, 우물, 주택과 단 채로 된 광(주물은 제외), 농장에서의 여러 부속시설 등 건물의 종물 포함

(다) 입목죽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 명인방법에 의한 것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입목죽(가로수, 관상수, 조림 등)

(라) 공작물 : 땅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시설물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구축물(도로조성비, 도로부속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마) 기계기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기구 및 기타 지방 회계기준에 의한 기계장치

-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기구
- 2) 2025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계기구는 없음.

(바)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사)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함.

(아)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전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 회 원 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 관리계획의 내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가)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 1) 취득 및 처분의 경우 : 10억원

(나)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1)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 2)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인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나) 사업기간, (다) 소요예산, (라) 사업규모, (마) 기준가격 명세, (바) 계약방법

[표15-1] 종류별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현재액		202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25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9,423	2,239,758	29,455	2,327,220	217	294,590	42	17,146	29,630	2,604,664
토 지	1,883	1,389,489	1,891	1,396,101	22	83,380	36	16,687	1,877	1,462,795
건 물	159	277,654	165	328,191	11	122,453	2	342	174	450,302
입 목 축	8,611	17,032	8,611	17,032	0	0	0	0	8,611	17,032
공 작 물	18,462	469,362	18,482	469,663	172	23,104	3	57	18,651	492,709
기계기구	245	10,637	245	10,637	0	0	0	0	245	10,637
무체재산	25	284	25	284	4	8	0	0	29	292
유가증권	2	400	2	400	0	0	0	0	2	400
용익물권	28	5,240	26	5,120	4	860	1	60	29	5,920
회 원 권	8	197	8	197	0	0	0	0	8	197
건설중인 재산	-	69,464	-	99,596	4	64,785	0	0	4	164,380

※ 연도말 현재액은 26,047억원으로 전년도 말의 23,272억원보다 2,775억원이 증가함.

[표15-2] 용도별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2,327,219,978,664	294,590,026,904	17,145,812,987	2,604,664,192,581	
행정 재산	소 계	2,181,246,641,972	229,805,451,803	17,145,812,987	2,393,906,280,788
	공 용 재 산	412,398,127,277	6,180,024,635	1,438,243,522	417,139,908,390
	공공용재산	1,768,848,514,695	223,625,427,168	15,707,569,465	1,976,766,372,398
	기업용재산	0	0	0	0
	보 존 재 산	0	0	0	0
일 반 재 산	46,377,475,115	0	0	46,377,475,115	
건설중인 재산	99,595,861,577	64,784,575,101	0	164,380,436,678	

[표15-3] 용익물권 현황(서울 공유재산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연번	재 산 명	소 재 지	취득액	형 태	물권사용 시작일자	물권사용 종료일자	유상사용료 (월)
	합 계		5,920				
1	가로경관과 사무실	자양동 769-7 K&S빌딩 2층	150	전세권	2018.04.15.	2025.06.30.	6.7
2	교육지원과 사무실	자양동 769-7 K&S빌딩 7층	100	전세권	2019.12.10.	2025.06.09.	7.3
3	아동청소년과 사무실	자양동 769-7 K&S빌딩 9층	100	전세권	2021.01.02.	2025.06.30.	7.0
4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중곡동 171-24 3~4층, 지하1층	150	전세권	2022.10.25.	2029.10.24.	9.8
5	면곡시장 상인교육장	중곡동 580-1	300	전세권	2022.04.14.	2027.04.13.	-
6	노론산골목시장 상인교육장	자양동 553-61	70	전세권	2015.04.29.	2026.03.18.	-
7	화양골목시장 상인교육장	화양동 34-4 3층 서쪽 끝	300	전세권	2021.06.15.	2026.06.14.	-
8	서울시 청년 룩비즈니스센터	자양동 227-17 4층	50	전세권	2021.11.01.	2026.12.31.	4.7 (서울시)
9	서울청년센터 광진	군자동 235	150	전세권	2020.04.01.	2026.03.31.	10
10	시각장애인 전용컴퓨터	중곡동 80-9	50	전세권	2021.04.15.	2026.04.14.	3.6
11	수어통역센터	구의동 243-13 리버비스타구의 301호	70	전세권	2020.04.20.	2030.04.19.	5.1
12	수어통역센터	구의동 243-13 리버비스타구의 302호	30	전세권	2020.04.20.	2030.04.19.	
13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 광진가족지원센터	자양동 216-2 제일빌딩	300	전세권	2017.10.10.	2027.12.31.	-
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양동 216-2 외 1필지	760	전세권	2018.12.01.	2026.11.30.	3.5
15	자양제4동 제1경로당	자양동 251-62	300	전세권	2024.01.10.	2026.01.09.	-
16	중앙경로당	자양동 633-12 1층	270	전세권	2020.05.04.	2026.05.14.	-
17	중곡4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곡동 58-5	300	전세권	2022.01.20.	2026.01.19.	-
18	중곡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곡동 126-19 201호	220	전세권	2020.01.10.	2026.01.09.	-
19	중곡3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곡동 173-9 B02호	50	전세권	2015.02.28.	2027.02.27.	-
20	구의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구의동 637-4 B01호	250	전세권	2021.11.23.	2027.12.31.	-
21	자양4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자양동 197-40 1층	300	전세권	2024.06.27.	2026.06.26.	-
22	군자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군자동 469-21	315	전세권	2023.01.31.	2027.01.31.	-
23	구의3동 환경공무원 휴게실	구의동 587-73, 2층 302호	300	전세권	2024.04.15.	2026.04.14.	-

연번	재 산 명	소 재 지	취득액	형 태	물권사용 시작일자	물권사용 종료일자	유상사용료 (월)
24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구의동 252-100, 201~202호	30	전세권	2023.08.1.	2025.08.01.	2.4
25	신성전통시장 상인교육장	중곡동 79-12	200	전세권	2023.08.09.	2028.08.09.	-
26	구립 중앙경로당	자양동 613-31	795	전세권	2025.02.25.	2029.02.24.	-
27	중곡1동 주민센터	중곡동 244-10	10	전세권	2025.08.20.	2026.08.19.	-

[표15-4]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의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계
합 계		6,212
지적재산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0
	특허권	0
	저작권	0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개발비	292
용익물권	지상권, 구분지상권(존속기한이 유한한 것)	5,920

## 다. 물품

### [법적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2호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공유재산(법 제4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2) 작성대상 물품

- 59개 정수물품[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9호, 2019. 7. 10.)]
- 연번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의 정수 연번
- 정수는 정수 승인된 물품수량
- 정수물품분류번호~내용연수, 물품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액의 작성기준일은 연도 말 현재
- 전년도말 현재액은 연도말 현재-당해연도말 보유액을 기준으로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을 정리

#### ➤ 「2025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1) 정수물품 :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 보유 수량을 말하며, 조직의 정원, 기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책정이 필요함.
- 2) 비소모품 :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16-1] 물품 증감 현황(정수물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현재액	2024년도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5년도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1,149	1,589	99	342	1,346
금 액	14,813	15,333	542	1,385	14,491

[표16-2]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유재산	2,037,970	2,163,830	2,239,758	2,327,220	2,604,664
물 품	12,814	12,280	14,813	15,333	14,491

[표16-3] 2025회계연도 정수물품 취득현황(일반회계)

(단위 : 개, 천원)

예산과목		취득물품현황			
부 서 명	세부사업	물 품 명	수량	구매액	물품구매일
합 계			99	542,225	
행정 지원 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 기금-신청사 건립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23	52,255	2025-04-20 외
		비디오프로젝터	1	3,960	2025-09-04
체육 진 흥 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디지털비디오 레코더	1	4,729	2025-11-12
어르신복지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버스	1	236,163	2025-02-24
		냉난방기	2	3,970	2025-06-18 외
		냉방기	4	6,940	2025-07-23 외
		비디오프로젝터	2	4,694	2025-08-11 외
도시 안전 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냉난방기	4	21,800	2025-09-17
청 소 과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냉방기	1	640	2025-07-18
교통 지도 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디지털비디오 레코더	1	19,135	2025-04-24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2	16,592	
공 원 녹 지 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 기금-신청사 건립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3	27,882	2025-04-30
치 수 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 기금-신청사 건립	냉난방기	2	1,920	2025-04-23
		노트북컴퓨터	26	31,600	2025-05-10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1	466	2025-05-27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준설사업	화물트럭	1	60,791	2025-06-26
의 회 사 무 국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노트북컴퓨터	15	20,082	2025-02-10 외
보 건 정 책 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 기금-신청사 건립	비디오편집기	1	800	2025-04-30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3	11,235	2025-06-02
중 곡 1 동	동청사 유지관리	냉난방기	1	1,500	2025-10-16
구 의 2 동	동청사 유지관리	냉방기	1	840	2025-08-04
자 양 3 동	동청사 유지관리	냉난방기	2	12,606	2025-07-03
		비디오프로젝터	1	1,624	2025-09-11

## 9. 금 고

### [법적근거]

####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금고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은행법」에 따라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거래은행을 말함.

#### ▶ 「지방회계법」 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

### 가. 광진구 금고 지정현황

(1) 금고은행 : (주)국민은행(약정 체결일 : 2022. 12. 2.)

(2)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3) 약정방법 : 광진구 ⇔ (주)국민은행 간 협약체결

※ 2019~2022년 광진구 금고 : (주)국민은행(약정 체결일 : 2018. 12. 3.)

### 나. 금고관리 현황

#### (1) 금고운용 보고

##### [가] 2025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

○ 예금과목별 현황(2025.01.01.~06.30.)

(단위 : 천원)

구 분	예금잔액	평균잔액	이자수입
합 계	213,183,772	274,310,536	5,013,353
정기예금	170,598,000	197,912,581	3,860,314
기업자유예금(MMDA)	10,987,232	13,677,118	159,406
공금예금(별단예금)	31,598,540	62,720,837	993,633

##### [나] 2025년 하반기 금고운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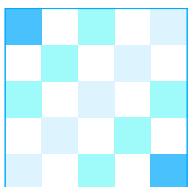
○ 예금과목별 현황(2025.07.01.~12.31.)

(단위 : 천원)

구 분	예금잔액	평균잔액	이자수입
합 계	215,833,962	254,627,937	3,626,474
정기예금	176,663,600	167,057,374	2,859,213
기업자유예금(MMDA)	9,304,313	10,933,320	130,351
공금예금(별단예금)	29,866,049	76,637,243	636,910

## IV . 개 선 · 권 고 사 항

1.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기 편중에 따른  
예산집행 비효율 문제 ..... 68
2. 재난관리기금 집행사업의 용도 부합성 검토 강화 및  
일반사업성 경비 집행 개선 ..... 70
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구조 개선 필요 ..... 72





# 1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기 편중에 따른 예산집행 비효율 문제

## [추진배경]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지역현안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그 취지상 적기 교부와 연도 내 계획적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목적이 지정된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월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영 성과는 교부 시기의 적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부금액	비 율
합 계	17,438	100.0
상 반 기	5,781	33.2
하 반 기	11,657	66.8
<b>11월말 이후</b>	<b>6,166</b>	<b>35.4</b>

※ 특히 하반기 교부금액이 11월말 이후 6,166백만원이 집중적으로 교부됨. 이는 전체 교부금액의 35.4%, 하반기 교부금액의 52.9%에 해당하는 규모임.

이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도 하반기, 특히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집중 교부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실시설계, 계약심사, 입찰 및 계약체결, 공사 착공 등 일련의 예산집행 과정을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집행잔액이 증가하거나, 불가피하게 명시(또는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여 사업추진의 효과가 다음 연도로 이연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의 확보 후 적기 집행이 중요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회계연도 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월 및 집행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 중심의 사업 선정, 서울시 조기 교부 협의 강화, 연말 교부 예산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2

# 재난관리기금 집행사업의 용도 부합성 검토 강화 및 일반사업성 경비 집행 개선

### [추진배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sup>22)</sup>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며, 그 사용범위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재난관리기금 통계목 중 시설비 집행액 총 1,570백만원에 대하여 그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업은 폭염·풍수해·대설·붕괴 등 재난예방 또는 복구와 일정한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상당수 사업은 통상적인 생활환경 개선·시설정비·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보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 재난관리기금 집행사업 검토표 (13개 사업)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집행금액	검토의견
합 계		1,569,501	
도시안전과	동행버스 정류소 스마트 그늘막 설치	97,375	폭염 대응 논리 가능하나, 일반 편의시설 설치와 혼재 우려
도시안전과	스마트휴쉼터 냉방기 교체	21,800	폭염 저감 목적은 있으나, 일반 시설개선과의 구분 필요
도시안전과	파라솔그늘막 의자 설치	5,629	폭염 대응 논리 있으나, 주민편의시설 성격이 강함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湓),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집행금액	검토의견
건 축 과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19,304	방법 목적 혼재
치 수 과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1,050,000	기금 목적 부합 (침수피해 예방)
도 로 과	이면도로 제설용 동주민센터 차량 지원	68,700	기금 목적 부합 (대설·한파 대응을 위한 장비 지원)
환 경 과	구의2동 담장 주변 토사 제거 및 배수로 설치	5,200	기금 목적 부합 (집중호우·붕괴 예방)
어르신복지과	구의새마을경로당 노후축대 긴급보수공사	11,400	붕괴위험 확인한 경우 가능 일반 유지보수와 구분 필요
공원녹지과	아차산 맨발길 안전 핸드레일 설치	55,881	일반 여가·보행 안전시설 정비 성격
교육지원과	능동로10길 안전통학로 조성 설계용역	21,340	통학환경 개선·교통안전 사업 성격
치 수 과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용역	94,472	기금 목적 부합 (지반침하 위험 예방)
체육진흥과	중곡문화체육센터 긴급보수공사	48,960	재난예방 사업이나, 일반 시설 유지보수와 구분 필요
체육진흥과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	69,440	재난피해 복구사업이나, 일반 시설복구와 구분 필요

즉, 전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재난관리 목적성과 일반행정 목적성이 혼재되어 있어, 기금 편성 단계에서 용도 부합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광진구 재난관리기금 소관 부서에서는 각 사업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서 기금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난위험도, 피해발생 가능성, 긴급성, 기금 외 대체재원 확보가 곤란한 사유 등을 명시한 ‘기금사용 사전검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 시 사후 성과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구조 개선 필요

#### [추진배경]

이행강제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이며, 단순한 세외수입 수납을 넘어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집행 수단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 2025년 주택과 및 건축과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

(단위 : 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A)	미수납액 (B)	미수납 비율 (A/B)
주택과	4,493,566,740	1,653,314,050	36.79%
건축과	466,754,540	174,496,130	37.38%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의 미수납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36.79%이며, 건축과는 37.38%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가 당해연도 하반기(10월 또는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회계연도를 경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도 내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되는 특성상 초기 징수 단계에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체납이 누적되고, 장기 미수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수 지연은 성실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세입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이행 확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미수납액 발생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과·징수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기 징수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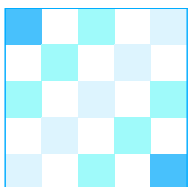
### **[개선 및 권고사항]**

관련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의 합리적 조정 및 분산을 통해 납부기한이 동일 회계연도 내에 도래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 . 수 범 사 례

1. 동 주민센터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77  
[자치행정과]
2.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신설 ..... 78  
[세무2과]
3. 증곡권역 찾아가는 문해교육 강사 지원 ..... 80  
[평생교육과]
4. 바로 쓰는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 81  
[평생교육과]
5. 광진구-광진구 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 한방치료 지원 .... 82  
[아동청소년과]
6. 거리가게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83  
[가로경관과]
7.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 ..... 85  
[교통지도과]





# 1 동 주민센터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명 : 동 주민센터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추진시기 : 2025. 3월~5월
- 사업대상 : 15개 동 주민센터 CCTV 251대
- 총사업비 : 금31,360천원 (당초예산 135,000천원)  
⇒ 예산절감액 : 103,640천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대비 76.8% 수준 예산 절감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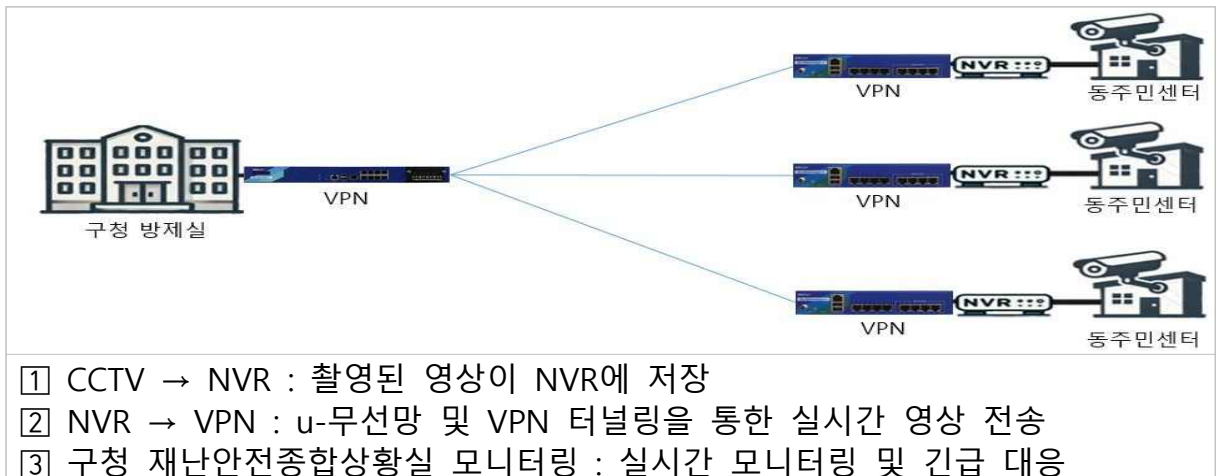
## [추진내용]

- 동 주민센터 CCTV 영상을 구청 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 CCTV 이전 설치
  - VPN을 적용한 u-무선망 구축을 통한 통합 관제 인프라 조성

## [사업평가]

- 구청 종합상황실과 연계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각종 안전사고, 범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인지 및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보안기준 충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악성(특이)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보호와 민원인 2차 피해 방지 등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자료]



## 2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신설

### [사업개요]

#### ○ 추진배경

- 2025. 2. 9.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면허증 교부
- 유사업종(예 : 의료기기판매업,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과 조세형평성 문제 발생

####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의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추가 및 세액 검토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의 업무특성과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과세대상 확대 필요
-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세액 검토

### [추진내용]

#### ○ 등록면허세(면허분) 제도개선안 제출 ⇒ 서울시 세제과

- 주요내용 ①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를 추가
- 주요내용 ② : 가장 유사한 업종인 의약품 판촉영업자(3종)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별 면허 신설

####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 개정 (2025.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6. 1.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를 추가
-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부터 적용

### [사업평가]

#### ○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세입을 증대하여 광진구 재정 기반 확충에 일조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사례입니다.

(※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866건, 24백만원 과세)

## [관련자료]

### 2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839 관련 발표1)

####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표1)	□ <u>관개량 재개장에 따른 면허 종류(별표)</u> 신설
○ < 신 설 >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영업자의 신고(제3종 275호)
○ < 신 설 >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제4종 213호)
○ < 신 설 >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제4종 214호)
○ < 신 설 >	○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 물질 사용 신고(제5종 제49호)
□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표1)	□ <u>관개량 재개장에 따른 면허 종류(별표)</u> 조정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이동 사용 허가(제4종 103호)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 허가(제4종 103호)
○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제4종 104호)	○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제4종 104호)

- 55 -

○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제4종 208호)	○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제4종 208호)
○ 「원자력안전법」 제55조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제4종 209호)	< 삭 제 >

#### □ 개정내용

-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
  -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영업자 신고,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등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명 수정\*
  - \* 예. (중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허가  
→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 허가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설된 면허 중 '25.12.31. 이전 득한 면허는 '26.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부과

- 56 -

### 3 중곡권역 찾아가는 문해교육 강사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5. 9월~12월 (4개월)
- 추진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비문해자 및 저학력자)
- 추진장소 :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곡2동 소재)
- 추진내용 : 찾아가는 문해교육 초등한글(2개반) 강사 지원
- 소요예산 : 2,610천원 (구비)

#### [추진내용]

-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한글 2개반 운영 및 강사 지원 (시범운영)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및 시간	학습자수	이수자수	이수율
합계	2개 프로그램		39명	35명	90%
1	한글섬김반 (초등한글 2단계)	2025. 9. 1.~12. 19.(16주/84시간) [월/수/금 09:30~11:30]	18명	18명	100%
2	한글사랑반 (초등한글 2단계)	2025. 9. 1.~12. 19.(16주/90시간) [월/수/금 10:00~12:00]	21명	17명	81%

#### [사업평가]

- 중곡권역 내 문해교육 전담기관 부재로 인한 성인 문해교육 공백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문해교육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학습자들에게 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동시에 ② 학습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6만원→1만원)하였습니다.
- 향후 「찾아가는 문해교육」의 성공적 정착 이후 어르신 학습자들이 문해능력 향상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한글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관련사진]



## 4 '바로 쓰는'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 운영기간 : 2025. 7월~9월 (22회)
- 대상 : 문해학습자 및 일반 구민 (44명)
- 내용 : 스마트폰, 디지털 금융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 소요예산 : 금3,000천원 (시비)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공모사업 선정

### [추진내용]

-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결제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 운영을 통한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 전통시장 및 매장 방문을 통한 모바일 결제, 키오스크 활용 등 현장 체험교육을 통한 '바로 쓰는 디지털' 구현
- 반복 실습,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높은 만족도 및 학습 지속 참여 성과 달성

### [사업평가]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 환경 등이 급변하는 가운데, 생활 밀착형 실습 및 체험 중심 운영으로 학습자의 실생활 적용 능력을 향상한 사례입니다.
- 특히, 전통시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운영하여 향후 지역기관 및 생활기반 시설과 연계한 확장형 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사진]



## 5

# 광진구-광진구 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 한방치료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5. 9. 25.~2026. 9. 24.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협약 연장
- 지원대상 :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중 한방치료 필요 아동 20명
- 지원내용 : 대면진료 2회 및 한약 30일분(260천원 상당) 제공
- 제공장소 : 한의사회 지정 관내 한의원 5개소
- 지원금액 : 약 5,200천원 ※ 광진구 한의사회 전액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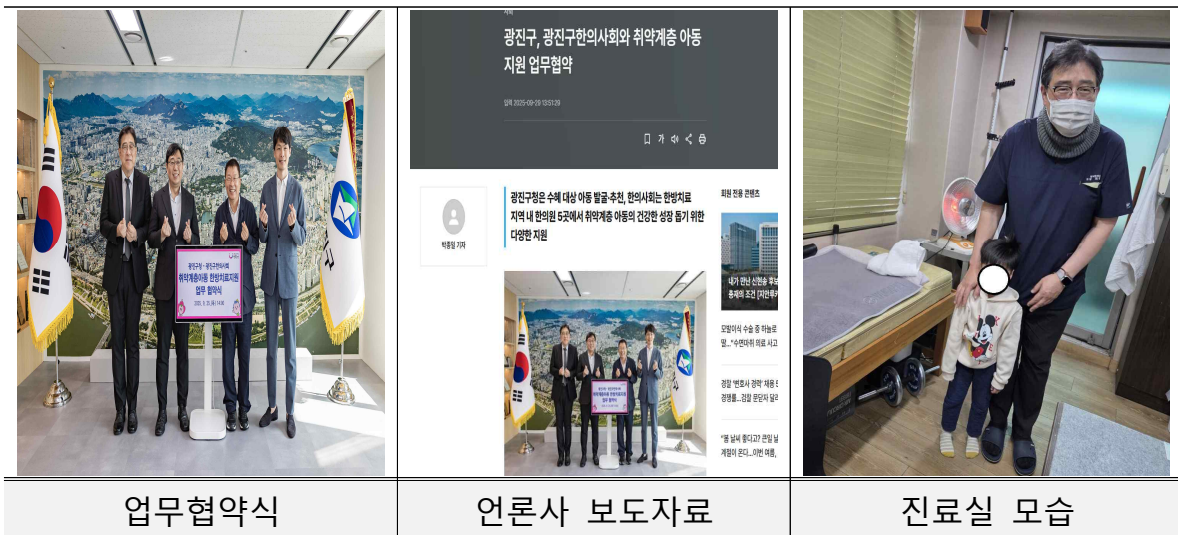
### [추진내용]

- 광진구-광진구 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 한방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 2025. 9. 25.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드림스타트) : 한방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광진구 한의사회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20명에게 한방치료 지원

### [사업평가]

- 지속적인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기여하고, 복지대상자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며 보듬는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사진]



## 6 거리가게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명 :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강화
- 위치 : 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동서울터미널 등
- 규모 : 총 105개소 정비
- 사업기간 : 2025. 1월~12월
- 사업내용 : 주요 보행불편 구간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거리가게 등 집중 정비

### [추진내용]

- 주요 보행불편 구간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거리가게 등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 추진
- 현장 계도, 자진정비 유도, 행정조치 및 사후 순찰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
- 2025년 정비실적









(단위 : 개소)

합 계	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동서울터미널	기타
105	72	10	2	10	11

### [사업평가]

- 광진구에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정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가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2022년 불법 거리가게 9개소, 2023년 35개소, 2024년 48개소, 2025년 105개소를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4년간 총 197개소 정비완료)
-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 주변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관련사진]**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p>건대입구역 2번출구 일대</p>		
<p>건대입구역 하부</p>		
<p>건대입구역 6번출구 일대</p>		
<p>동서울 터미널 앞</p>		

## 7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

### [운영개요]

구 분	50플러스동부캠퍼스 공영주차장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 치	자양동 57-153 (자양4동)	자양동 43-44 (자양4동)
공사기간	2016. 9. ~ 2024. 12.	2022. 12. ~ 2025. 4.
규 모	지하1층~지하3층	
주차면수	164면	170면
운영개시	2025. 2. 1.	2025. 7. 1.
운영방식	거주자 우선 100면, 시간제 64면	거주자 우선 100면, 시간제 62면, 상인회 월 정기 8면
운영시간	24시간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적용)	
운영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 [추진내용(성과)]

- 운영계획 수립 : 운영방식, 운영기관, 운영개시 등 결정
- 운영협약 : 광진구-광진구시설관리공단 위·수탁 협약
- 이용자 배정 :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신청자, 상인회 등 배정
- 임시운영 : 정식 운영 전 사전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운영 효율성 등 점검
- 정식운영 개시 : 주차장 유지보수, 운영관련 민원 처리 등

### [사업평가]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자양4동 주택가 인근 지역에 신규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사례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과 시간제 주차를 병행 운영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유휴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주민 체감 사업**이라 평가합니다.

### [관련사진]



50플러스동부캠퍼스 공영주차장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